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6. 9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정보통신망 침해사고와 관련하여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의 주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「전기통신사업법」이 개정됨에 따라, 평가 대상·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침해사고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대상·기준 등(안 제37조의2)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행하는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와 관련한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의 대상을 선정할 때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의 발생 정도 등을 고려하고,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여부 등을 평가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8. 28. ~ 9. 14.)

3) 행정규제 : 규제심사 전

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(종전의 제1항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**법 제32조제2항**”을 “**법 제32조제2항제2호**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2항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**제1항**”을 “**제2항**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3항) 중 “**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**”을 “**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**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4항) 중 “**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**”을 “**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**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업무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.

1.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별 이용자 규모
2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 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(이하 “침해사고”라 한다)의 발생 정도

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평가기준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평가 대상자의 이용자 보호 업무를 평가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5조의5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수준 평가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.

1.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여부
2. 침해사고에 관한 이용자 보호 관련 법규 준수 실적
3. 그 밖에 침해사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

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업무를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영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7조의2(이용자 보호 업무의 평가 대상 등) <신 설>	제37조의2(이용자 보호 업무의 평가 대상 등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업무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. 1.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별 이용자 규모 2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(이하 “침해사고”라 한다)의 발생 정도
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업무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대상자를 선정한다. 1. ~ 3. (생략) <신 설>	② ----- 법 제32조제2항제2호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평가기준에

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매년 다음 각 호의 평가기준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평가 대상자의 이용자 보호 업무를 평가하여야 한다.

1. ~ 5. (생략)

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대상자에게 평가 10일 전까지 평가 일정 및 내용 등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서면으로 통지하고,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.

따라 제1항에 따른 평가 대상자의 이용자 보호 업무를 평가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5조의5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수준 평가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.

1.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여부

2. 침해사고에 관한 이용자 보호 관련 법규 준수 실적

3. 그 밖에 침해사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

④ -----

-- 제2항-----

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-----

-----.

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평가 대상자의 이용자 보호 업무를 평가한 결과를 각각 평가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관련 정책의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-----

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업무를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	
연 락 처	(044) 202 - 6468